

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176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1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3. 상정결과 :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
 -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: 2023년 9월 4일
 -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(심사보류)
 -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: 2023년 9월 11일
 - 상정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1. 제안이유

-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,
- 전문지식과 활동경험,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

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여성공예인의 일 자리창출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,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여성공예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 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민간위탁 필요성

- 여성공예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
-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공예창업 직업교육훈련, 취·창업 지원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: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- 서울여성공예센터 시설유지·관리 및 운영 활성화 업무

-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자 모집 및 선정·관리,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시민 창작교육,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공예마켓, 공예체험장, 마을커뮤니티센터(카페 포함) 운영
-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“시”가 요구하는 사항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소재지 :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

○ 규모 : 연면적 5,724m²(지하1층/지상4층)

○ 시설현황 : 여성공예인 창업실 및 교육실, 공예마켓, 체험장, 스튜디오 등

○ 인력운영 : 15명(센터장 1, 팀장 4, 직원 10)

○ 위치도



마. 위탁기간 : 2024.1.1.~2026.12.31.(3년간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사. 소요예산 : 금1,762,674천원('23년 예산)

○ 민간위탁금 : 1,750,144천원

- 인건비 781,871천원, 사업비 391,808천원, 관리운영비 576,465천원

○ 민간위탁사업비 : 12,530천원

- 업무용 컴퓨터(데스크탑) 교체 : 7,470천원

- 생활창작공간 전기 도자가마 교체 : 5,060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25조

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2. 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9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(1)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- (2) 종합성과평가 실시, 재위탁 요건 충족
 - 평가일시 : '23년 제2차 종합성과평가(2~5월)
 - 주관 : 한국산업관계연구원
 - 평가점수 : 78.76점(요건충족 60점 기준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여성공예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라”함)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6년이 경과하여,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제4조의3제2항1)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서울여성공예센터 시설 유지·관리 및 운영 활성화 업무
 -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자 모집 및 선정·관리에 관한 사무
 -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공예분야 생활 창작, 시민 참여활성화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
 - 그 밖에 여성공예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서울여성공예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예 특화사업 운영을 통해 공예기업과 시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2)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임.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9. 3. 28, 2021.12.30.>
 - 2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2. 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

-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 2017년 2월에 최초 설치한 이후 계속해 수탁하여 운영해 왔으며, 센터의 운영 및 추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.

<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>

소재지	면적(m ²)	연간사업비 (천원)	위탁기간	수탁법인(대표)
노원구 동일로174길 27 (舊 북부지청)	5,723m ² (지하1층, 지상4층)	1,763백만원 (‘23년 기준)	’22.1.1.~’23.12.31. (개소일:’17.2.1.)	서울시여성 가족재단(정연정)

(단위 : 명)

계	센터장	팀 장	직 원
15	1	3	11

추진사업	성과지표	(‘22)목표	(‘22)실적	달성율
공예창업 지원사업	1. 여성공예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			
	1-1. 여성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수	83팀	88팀	106%
	2. 여성공예창업기업 역량강화			
	2-1. 역량강화 빌드업 교육 진행 횟수	10회	44회	440%
	2-2. 제품개발 지원 교육 진행 횟수	50회	74회	148%
	2-3. 유관기관 연계 지원 건수	2건	4건	200%
	3. (예비)여성공예창업가 마케팅 지원			
	3-1. 온라인 판로지원 성과	30팀	64팀	213%
	3-2. 오프라인 판로지원 성과	30팀	42팀	140%
	3-3. 박람회 참여 지원 건수	30팀	41팀	137%
3-4. 클래스 개설 지원 건수	20팀	38팀	190%	
공간 활성화	4. 생활창작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			
	4-1. 프로그램 진행 횟수	220회	211회	96%

로 하는 시설

지원사업	4-2. 프로그램 참가자 수	900명	1,368명	152%
	4-3. 프로그램 개강률	78%	78.1%	100%
	4-4. 공예 체험 신규 프로그램 개발	4건	14건	350%
	5. 공예·메이커 문화 확산			
	5-1. (예비)창업자, 생활창작자 참가자 수	200명	319명	160%
	5-2. 유관기관 협력 성과	25건	26건	104%
	5-3. 행사 방문객 수	1,000명	6,440명	644%
	6. 홍보매체 다각화			
	6-1. 홈페이지 방문자 수	120,000명	104,404명	87%
	6-2. SNS 방문자 수 (21년도 13,133명 대비 30%증가)	17,073명	16,236명	95%
	6-3. 뉴스레터 구독자 유입 실적 (21년도 226명 대비 20% 증가)	271명	297명	110%

<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위 >

구분	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
1차	'17.2.1.~'19.1.31.	(사)일상예술창작센터	공개모집 (시의회 동의 '16.9.9)
2차	'19.2.1.~'21.11.30.	(사)일상예술창작센터	공개모집
3차	'22.1.1.~'23.12.31.	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	공개모집

- 한편 2023년 제2회 종합성과평가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과 세밀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요한 성과를 보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(75점 이상)하는 78.7점을 기록하였으나,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으로 판로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개선요청사항으로 나타났음³⁾.

3) 서울특별시(2023.6), “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-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관리운영”, pp. 5~7.

<2023년 종합성과평가 주요내용>

주요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내외적 사업 분석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조직개편과 구성에 효과적으로 연계 및 관리 ▶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입주기업들이 입점에 성공
개선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관기관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▶ 개인 업무 시간 분석을 통한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파악 필요

- 또한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동부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도곡동 창업플라자(붙임1)와 유사사업 비교 후 통폐합과 사업수행 인력 산정 적정성 검토 권고를 받았음.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⁴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⁵⁾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

4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5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<개정 2014.5.14., 2020.7.16., 2021.5.20.>

2. 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

는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.
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6)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- 여성공예센터 운영 사무는 전문창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다양한 전문적 기능을 요구받는 공간으로,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7)에서 시장의 사무인 여성공예센터에 관리·운영에 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3 종합 검토 의견

-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

로 하는 시설

6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7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21., 2020.7.16., 2021.5.20>

정된다 할 것임.

- 여성공예분야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 지원과 시민공예창작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에 노하우를 지닌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이 업무아이디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.
- 다만 지난 수탁기관 공모시 공모기관이 없어 현 수탁기관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의계약으로 수탁을 받았는바,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함에 있어 집행기관은 경쟁력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.

붙임 동종(유사)사무 비교표

구분	도곡동 창업플라자	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
시설 현황		
위치	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도곡역사 내 대합실(지하 2층, 3층)	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(지하1층, 지상 4층)
규모	743.2㎡(약 225평)	5,723.57㎡(약 1,734평)
주요 시설	행정실, 보육실, 스튜디오실, 회의실, 상담실, 장비실, 휴게실, 교육장 등	창업실, 교육실, 체험장, 스튜디오, 마을커뮤니티센터 등
주요 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여성창업 활성화 - 창업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, 입주기업 판로지원, 맞춤형 창업지원 등 - 유관기관(SBA, 창업허브 등) 연계를 통한 판로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여성공예창업 지원 - 창업공간 제공, 홍보 및 컨설팅, 교육, 공예마켓 운영 등 → 창작 및 판매(판로확대) 원스톱 지원 ◦ 시민창작(생활창작) 활성화 지원 - 체험 프로그램 및 공예체험장 운영 등 → 공예 가치 확산 및 시민인식 제고
개관일	'13. 4월~	'17. 1월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11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,
- 나. 전문지식과 활동경험,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여성공예인의 일자리창출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,
- 다.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여성공예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 근거
 -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여성공예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
-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공예창업 직업 교육훈련, 취·창업 지원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: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- 서울여성공예센터 시설유지·관리 및 운영 활성화 업무
-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자 모집 및 선정·관리,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시민 창작교육,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공예마켓, 공예체험장, 마을커뮤니티센터(카페 포함) 운영
-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“시”가 요구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
- 규 모 : 연면적 5,724㎡(지하1층/지상4층)
- 시설현황 : 여성공예인 창업실 및 교육실, 공예마켓, 체험장, 스튜디오 등
- 인력운영 : 15명(센터장 1, 팀장 4, 직원 10)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'24.1.1. ~ '26.12.31.)

바. 수탁기간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: 금1,762,674천원('23년 예산)

○ 민간위탁금 : 1,750,144천원

- 인건비 781,871천원, 사업비 391,808천원, 관리운영비 576,465천원

○ 민간위탁사업비 : 12,530천원

- 업무용 컴퓨터(데스크탑) 교체 : 7,470천원

- 생활창작공간 전기 도자가마 교체 : 5,060천원

자. '23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권고)('23.7.26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25조

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2. 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'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종합성과평가 실시, 재위탁 요건 충족

- 평가일시 : '23년 제2차 종합성과평가(2~5월)

- 주관 : 한국산업관계연구원

- 평가점수 : 78.76점(요건충족 60점 기준)

○ 근 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8조(종합성과평가)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조 제1항

※ 작성자 :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일자리팀 김남지 (☎2133-5022)